

	집중수업 운영규정	문서번호	3-4-21		
		제정일	2019. 04. 12.		
		개정일			
		페이지	1/1	관리 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9조(집중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집중수업”이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로 학점당 이수시간 (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업개설) 집중수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집중수업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운영방법) ① 집중수업은 학기중, 또는 방학중 개설 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제외하고는 일반 교과목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② 집중수업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15주 운영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집중수업 기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시간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